



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드릴 말씀은 [2024.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] 및 2024.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우리 학교의 출결 상황 관리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출결 상황 관리

① 결석

가. 결석일수의 산정

- 1) 학칙에 따라,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.(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).

나. 출석인정 결석

- 1) 지진,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(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)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2)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3)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'학교·시·도(교육청)·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, **교환학습, 교외체험학습**, 「학교보건법」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'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
- 4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이수 기간
- 5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 제7항에 따른 상담,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
- 6)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
구 분	대 상	일 수	비 고
결 혼	·형제, 자매, 부, 모	1	※ 경조사 일수에 재량 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.
입 양	·학생 본인	20	
사 망	·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	5	
	·부모의 조부모(증조부모, 외증조부모), 부모의 외조부모(진외증조부모, 외외증조부모)	3	
	·형제.자매 및 그의 배우자	1	

- 7) 기타 부득이한 사유(학교 사고 등)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

다.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(병결)

- 1) 3일 이상의 장기결석: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,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)와 학부모 작성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- 2) 1~2일의 단기결석: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진료확인서, 학부모 의견서, 처방전, 담임교사 확인서 등)와 학부모 작성 결석사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
※ 학부모 작성 결석사유서 : 학교 홈페이지->공지사항에 양식 탑재

※ 올해부터는 학교종이앱 <결석계 및 체험학습>게시판 - 결석사유서 작성하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.

라. 미인정 결석

- 1)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(태만, 가출, 고의적 출석 거부,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, 도피 등)
- 2)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

마. 기타 결석

- 1) 부모, 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- 2)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
㉔ 학년 수료

- 가.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.
- 나.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의 경우 정원외 관리로 처리함.
- 다. 위 나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익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함.

2.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

가.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

- 1) 개인 교환학습: 1개월(4주) 이내
- 2) 단체 교환학습: 2주일 이내(단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인정)
- 3) **교외체험학습** ◆ 절차: 신청서 제출(3일전)→체험 실시→보고서 제출(7일 이내)

- ◇ 관찰, 조사, 수집, 현장 견학, 답사,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감염병 위기경보 '심각'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'가정학습'을 포함하여 **연 15일 이내**로 사용할 수 있다.
- ◇ 교외체험학습 **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**로 한다.
- ◇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(토·일 및 공휴일 제외/감염병 위기경보 '심각'단계의 경우 가정학습은 전일)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
- ◇ 절차: 신청서 제출(담임교사에게) →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→ 교외체험학습 실시 →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(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) →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
- ◇ 교외체험 승인 불가 사항: 사설학원, 종교단체,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,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, 허위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
- ◇ **학교 홈페이지->공지사항에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탑재**
올해부터는 학교종이앱 <결석계 및 체험학습>게시판 - 교외체험학습 신청하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3. 정원외 학적관리

가. 정원외 학적 관리의 대상

- 1) 입학이후 유예나 면제를 받은 자
 - 2)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(미인정유학 포함)
- 나. 정원외 학적 관리자의 재취학 - 재취학 신청서 제출

2024. 3. 11.

이 리 서 초 등 학 교 장